

금호타이어 주식회사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2 장 구성 및 임기

제4조 (구성)

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해임된다.

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정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 및 운영

제7조 (회의)

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회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장소 및 안건을 문서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 (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⑤ 상법 제393조의2의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- ②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 (이사회 보고)

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② 기타 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

제13조 (이사회 재의결)

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이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전문가의 조력)

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

본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